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39호 2023. 8. 4(금)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3-29호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회 람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4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3 - 29호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02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상수도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을 세분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긴급 사고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의 변경 (별표 1, 별표 2)

3. 입법예고기간 : 2023. 8. 2. ~ 2023. 8. 22.(20일간)**4.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상수도사업소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 오들1길 56[도통동 555], 남원시상수도사업소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873), 팩스(063-620-6720), 이
 메일(dgr1976@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상수도사업소(☎063-620-6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상수도사업소장

1. 개정이유

상수도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긴급 사고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의 변경 (별표 1,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8. . ~ 2023. 8. .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신 청 자 격 조 건		
1. 건설업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2. 시공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및 이에 준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수도법』 제25조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 운영 자격증 보유자(필수)		
3. 자본금	150,000,000원 이상		
4. 영업시설	사무실 20㎡ 이상 [남원시 소재로 등록된 사무실]		
5. 공사용 장비 및 공구	명 칭	규격	수량
	유압브레이크	20kg 이상	1대 이상
	엔진양수기 및 수중모터	50mm 이상	총 2대 이상
	포장절단기	120mm 이상	1대 이상
	램머	50kg 이상	2대 이상
	콤팩타	50kg 이상	2대 이상
	핸드절단기	120mm 이상	2대 이상
	핸드롤러	650kg 이상	1대 이상
	발전기	5kw 이상	1대 이상
	굴삭기	1.5톤 이상	1대 이상
	새들천공기	13 ~ 50 mm	2대 이상
	덤프트럭	1톤 이상	1대 이상

[별표 2]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평가 기준(제4조제2항)

항 목	기 준	배 점	평 점	
총 계		100		
1. 시공 능력	합 계		40	
	공사 실적	소 계		20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급수공사 대행 포함) 공사실적(대한전문건설협회, 남원시 발급)	5억 이상	20
			3억 이상~5억 미만	18
			1억 이상~3억 미만	16
			1억 미만	14
	운영 실적	소 계		20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 건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 분야 실적 기준)	50건 이상	20
			35건 이상~50건 미만	15
			20건 이상~35건 미만	10
20건미만			5	
2. 기술 능력	합 계		25	
	인력	소 계		10
		시공기술자 보유(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	기준보유(1명)	6
		추가 시공기술자 보유(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	1인당 2점(최대4점)	4
	경력	소 계		15
		시공기술자의 경력(합산) (기술인협회 발급)	15년이상	15
			10년 이상~15년 미만	12
			5년 이상 ~10년 미만	10
			5년 미만	7
		3. 급수공사 대행 수행 실적	합 계	
수행 기간(남원시 발급)			9년 이상	5
	6년 이상 ~9년 미만		3	
	3년 이상 ~6년 미만		2	
	3년 미만	1		
4. 수행 계획 및 방법	합 계		10	
	수행 계획	1) 공사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공사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하자대책 및 사후관리 방안 4) 문제점 분석 및 대책 5) 만원대응 방안	5	
		수행 방법	1)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시공)방법 등) 2) 수행공사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과업 적용성 3)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	5
	5. 장비 및 공구		합 계	
별표 1의 “공사용 장비 및 공구 보유”		20		
6. 행정처분 감점	1) 최근 3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협회 발행)	과징금 처분(-5점)		
	2) 급수공사 대행업관련 규정에 의한 제재처분 (남원시 발급)	영업정지처분(-10점)		

비고

1. 상대 평가 시의 등급별 배분 및 점수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에 의한다.
2. 동점자 발생 시에는 추첨으로 한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